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에 따라 폐소화기는 생활폐기물로 분류되고, 그 처리와 관련하여 각 지자체의 폐기물관리조례로 규정하도록 되어 있음

○「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」에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지정되어 있지 않아, 주민들이 처리하는데 불편이 있어 처리 규정을 신설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성주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12조 관련 대형 폐기물 품목 추가(안 별표 1)

4. 참고사항

○ 관계법령 : 「폐기물관리법」 및 「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」

○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
○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2018. 11. 8. ~ 2018. 11. 28.)

○ 규제심사 : 해당 없음〔기획감사실-9245(2018. 11. 15.)〕

○ 성별영향평가 : 개선사항 없음〔주민복지과-67035(2018. 12. 4.)〕

5. 검토의견

○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지자체로 위임한 생활폐기물 처리에 있어서 지역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써

○ 날로 증가하고 있는 폐소화기가 대형폐기물로 지정되지 않아 처리하는데 불편함이 있어 대형 폐기물로 지정하여 효율적으로 처리하고자 사항입니다.

○ 법리 검토결과, 관련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자치법규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와 지역주민 편의 제공을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